

『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8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9월 11일

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황필섭

나. 제안이유

-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의 재사용 신청 제한기간을 단축하여
상표 사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농가
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다시 신청 불가능 기간을 2년에서
1년으로 단축(안 제16조제2항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"불임"
 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7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불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용 우

□ 본 『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,
- 재사용 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상표 사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